용 역 시 방 서

용역명 : 청평수력 좌안 호안 보수 현장 산업안전 지원용역

2026. 10.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토건부

- 목 차 -

제 1장 용역설명서 1

제 2장 일반시방서 5

제 3장 특기시방서 12

제 1 장

용역 설명서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청평수력 좌안 호안 보수 현장 산업안전 지원용역

○ 용역목적 : 좌안호안 보수 및 기타공사 현장에 산업안전 지원용역을 시행하여, 인적·물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 용역기간 : 2026. 11월 ~ 2027. 6월 (공사기간 중 119인/일)

※ 해당 공사, 인허가 및 기타 등에 의한 일정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용역인력

○ 초급이상기술자 1명(건설안전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 안전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용역업체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중 최신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B등급 이상(S, A, B 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에 의거 **일반안전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중 최신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B등급 이상(S, A, B 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에 의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중 최신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B등급 이상(S, A, B 등급)

☞ 상기 3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하면 입찰자격 충족

※ 자격강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4. 소요예산 산출내역

○ 소요인력 : 119인·일

※ 실제 작업일수(=투입일수)에 따라 실적정산함,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용역금액 : 70,016,000원(부가세 별도)

5. 용역업무 및 역무범위

○ 용역업무

- 공사 기간 중 공사 현장 및 사면 등에 대한 산업안전 감시활동
-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 공사 및 산업안전 감독부서의 산업안전보건 관련업무 지시사항 수행

○ 역무범위

- 한수원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현장 안전점검 및 재발방지 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현장 적발 시 안전지적서 발행 등 시정조치)
-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제시 등 조치
-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확인 및 보고
- 화재예방 조치상태 점검, 보고
- 안전수칙 위반자 지적, 보고 및 계도, 안전지적서 발행 건의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관찰 및 지적·보고·계도
- 발전소 가시설물(강관비계 포함) 점검 및 계도 등 종합관리 지원
- 일일 용역업무 수행일지 작성 및 보고
- 안전감시지원 용역사 소속 상주근무자(현장 대리인)는 아침 정비회의 또는 오후 회의에서 전일 지적사항에 대한 발표(또는 부장 직보)
- 산업안전사고 등 재해발생 시 발주자의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조언 등 업무 지원 등
- 기타 안전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지적서 발행건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보고

☞ 상기 역무범위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6. 안전사고(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시 벌과금 부과

○ 대상 : 산업안전감시단 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한 휴업 3일 이상 안전사고

○ 벌과금 부과기준

구 분	휴업3일 이상 ~ 요양 3개월 미만	요양 3개월 이상	사망	비고
벌과금(만원/명)	100	300	1,000	산업안전감시단 관리 소홀 판정 시* 적용

* 안전사고 발생관련 본사주관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 5건 이상 발견되는 경우

○ 조치방법 : 용역비용 지불 시 공제

제 2 장

일반 시방서

1. 적용규정

가. 본 용역은 발주자의 사규 공사관리규정 및 본 용역설계서와 발주자 감독원의 안내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자 측의 제 규정에 따른다.

2. 용역 역무범위 및 역무내용

용역설명서 제5항(용역 대상 및 역무범위)의 역무범위 참조

3.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하여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약 상대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수행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 목적에 적합하도록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의 일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4. 협조 및 의무

가. 발주자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감독직원(이하"감독원"이라함)을 임명하여 용역업무의 감독, 계약 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타부서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 제2항에 명시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상주하게 한다.

다.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계획수립, 준비, 수행 및 결과 확인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여 상호 간에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용역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라. 발주자는 용역 시행 중 현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 계약 상대자는 투입인력을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 과정, 작업내용, 작업자의 투입사항 및 기타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장비,

설계도, 자료 및 안전관리용품 등 일체를 용역 준공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및 특기시방서” 내용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한 후 직원들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해 별도의 이행각서를 받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아. 대내·외 신뢰유지를 위하여 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의 왜곡된 전파 또는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명백한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안전사고(3일 이상 진단의 발급)가 발생하였을 때 특기시방서 6항에 따라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현장 상주인이 휴가 등 부재 시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5. 용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체결 후 아래 서류를 용역착공일 3일 전까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① 용역 착공계 1부

② 용역 수행계획서 1부

③ 용역비 산출 내역서 1부

④ 현장대리인계(학력, 경력,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⑤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 1부

⑥ 안전관리계획서 1부

⑦ 투입인력의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각 1부

⑧ 투입인력의 개인별 일반 및 특기시방서 이행각서 1부

⑨ 안정적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계획서 1부

나. 발주자는 “가”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상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용역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 직원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치 않았을 때는 용역수행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용역업무의 손실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라. 본 용역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용역업무 수행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피복, 안전장구*, 사무용품

* 검전기, 휴대용 가스농도측정기 등 안전점검 기구 포함

② 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용품(카메라, 호각, 단체조끼 등)

③ 기타 용역업무 수행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

④ 발전설비 및 시설에 손상을 주어 발주자에 손해를 입힌 금액

⑤ 용역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비 및 교육 관련 비용 일체

마. 계약 상대자는 아래에 따라 용역업무보고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일/주간 용역업무 수행일지 : 매일/주간

② 유해·위험요소 및 지적서 조치결과 확인 및 보고 : 주간

③ 용역수행 보고서 : 용역수행 종료 시

④ 용역 준공보고서 : 준공검사 요청서

⑤ 기타 감독부서의 요청서류 : 요구 기한 내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의 검사가 끝난 후 준공 조치를 행한다. 이때 준공검사 기간은 용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본 용역 관련 공무관리의 제반 서식 및 양식은 발주자가 정한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서식 및 양식은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노무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용역착공 전까지 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용역 투입인력 중 발주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① 해당 용역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발주자의 대외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의 왜곡된 전파 또는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를 이용한 때

⑤ 기타 용역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해당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상기 “나” 항의 사유에 의한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 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를 할 때 사전에 교육조건, 기술자 등급 사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라. 상기 “나”항의 1호의 사유로 교체된 인력은 재교육 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될 때 한해서 재투입 할 수 있다.

마.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①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용역기간 동안 발주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통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근무 형태와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바. 근태관리

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인력에 미달하여 투입할 때 잠재적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충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특기시방서 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매일 투입 인원에 대한 출근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휴일 및 휴가

① 투입인력이 휴가 등 부재사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발주처 사정으로

필요시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대기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추후 정산예정)

7. 시설 및 장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 전·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중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수행 중에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장비가 고장 나거나 고장사실을 은폐하면 변상조치 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위한 증명서를 발주자의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에 자체인력에 의해 발생한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특히, 화재 및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련법에 따라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빈틈없이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로 하여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도면, 자료 및 산업안전용품은 감독부서의 허가없이 발전소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며, 용역 준공 시 필히 발주자에게 반납한다.

마. 안전계약 특수조건 : 붙임 “가” 참조

9. 보안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발전소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른다. 이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다.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나" 항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에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 서명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시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전자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용역사업관련 자료 반납후 일체의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바. 사무실 사용과 관련된 인적, 물적손실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10.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자의 제 규정에 따른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관련법, 계약서, 시방서 및 발주자의 제 규정에 따라 계약불이행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투입한 인력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적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반건설 현장 주 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특기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산업안전관리 용역업무 수행은 시방서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시방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업무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 투입인력은 용역 투입일 전까지 발전소 관리구역 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및 기술자의 자격요건

가. 용역업체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중 최신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B등급 이상(S, A, B 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에 의거 **일반안전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중 최신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B등급 이상(S, A, B 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에 의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중 최신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B등급 이상(S, A, B 등급)

☞ 상기 3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하면 입찰자격 충족

※ 자격강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나. 기술자의 자격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안전감시단 초급기술자	건설안전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 안전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인력운영

가. 계약 상대자는 용역인력에 대하여 해당 자격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발

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토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인력은 적격인력으로 대체하여 재승인 요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및 계약확정 이후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발주자 내부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용역인력을 상주시켜 통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를 위해 적합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당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요구 또는 발주자가 인정한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교체를 할 수 있다.

☞ 인력교체는 기술자 자격기준을 충족한 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다.

☞ 교체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하며, 발주자 요구에 따른 교체는 인원제한을 하지 않는다.

마. 용역에 투입된 인력의 결근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된 사항(인적사항, 사전교육 이수여부 등)은 3일전 미리 통보한다. 대체인력 투입 시 6항의 산업안전 및 기타교육(건강검진 포함)을 이수한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 대체인력(기존 투입인력 外)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자료를 제출하여 기존 인력의 결근 시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감독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 후, 용역 기간 공정상의 사유로 적합한 용역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며 관련 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4. 용역대상 및 역무범위

○ 용역 대상

- 청평수력 좌안호안 및 기타공사 현장

○ 역무범위(제1장 용역설명서의 역무범위 참조)

- 감독원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현장 안전 점검 및 재발 방지 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활용상태 점검(현장 적발 및 시정조치)
- 유해·위험 요소 발굴 및 작업장 환경, 청결 등 조치
- 안전 수칙 위반자 지적, 보고 및 계도, 안전 지적서 발행
- 일일 용역업무 수행일지 작성 및 보고
- 주간 용역업무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지적서 발행건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보고
- 기타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컨설팅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기성고 지급

가. 기성고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및 발주자 사규 계약 규정에 따르며, 인건비는 실제 투입 일수부터 실적 정산한다.

나. 발주자의 사정으로 기간이 변경되어 용역 기간이 증감하는 경우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여 조정 지급한다.

6. 기성고 감액

계약 상대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아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성고 지급을 감액한다.

① 상주인력 미투입 시

[용역계약금액/(용역 일수×투입 인원)]×1.5×미투입 일수×미투입 인원

② 상기 기성고 감액에 대하여 이의 발생 시 발주자 용역감독원과 계약 상대자 현장대리인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 다만, 감액 조치를 함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7. 산업안전 및 기타교육

가. 계약 상대자는 현장 인력투입 전 사업소 내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교육 결과를 제출한다.

☞ 감독부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 이수

나. 현장 출입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필요시 감독부서 교육 시행)

다. 사이버 보안을 위한 보안 교육 수행

8. 안전사고(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시 벌과금 부과

가. 대상 : 산업안전감시단 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한 휴업 3일 이상 안전사고

나. 벌과금 부과 기준

	휴업3일 이상~ 요양 3개월 미만	요양 3개월 이상	사망	비고
벌과금(만원/명)	100	300	1,000	산업안전감시단 관리 소홀 판정 시* 적용

* 안전사고 발생 관련 본사 주관 특별점검 시, 위법 사항 5건 이상 발견되는 경우

○ 조치 방법 : 용역비용 지급 시 공제.